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역병 전역 보류 사유 추가 및 기간 연장〉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73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2.
3. 회부연월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훈련·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숙련인력 확보를 추가하고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 ③ (생략)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중요한</u>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u>숙련인력 확보</u> 및-----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6개월-----하고,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보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¹⁾에 따르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역병의 자발적인 전역 보류 가능 사유에 ‘숙련인력 확보’를 추가하고 전역 보류 기간을 6개월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군이 병력 자원을 보다 안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역병의 자발적 전역 보류 인원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8명	7명	14명	33명	90명
육 군	23명	7명	7명	11명	76명 ²⁾
해 군	0명	0명	2명	7명	12명
공 군	0명	0명	0명	0명	0명
해병대	5명	0명	5명	15명	2명

☐ 현행 현역병의 자발적인 전역 보류 사유는 중요한 작전, 훈련, 연습 등으로 이는 일시적, 비일상적인 군사적인 상황 전개를 전제로

1) 제18조(현역의 복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024년 남수단 평화유지군 파병 사유로 자발적 전역보류 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하고 있는데 비하여, 개정안의 ‘숙련인력 확보’ 사유는 군 운영에 있어서 상시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현역병의 자발적인 전역 보류 사유로 해당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록 전역 보류가 자발적 자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한 효과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 범위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야 함.

그런데, 개정안에서 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숙련인력의 확보’는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개정안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현역병의 자발적인 전역 보류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³⁾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전역 보류를 신청한 현역병의 경우 해당 인원은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 보류 후 신분을 명확히 함이 애초 입법 취지인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숙련된 병으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전역 보류 기간에 금전적 보상을 줄 수 있으며,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여 사회 복귀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1918009호 대안반영폐기 (2016.2.23.)) 검토보고서 참조

문 의 처
02)6788-5307